

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
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봉순 의원 등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8년 3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제안이유

○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충청북도를 실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○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.

○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

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
- 저소득 범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,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, 정신보건시설,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
5. 검토의견

-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,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를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체화 하고 있음.
- 이 조례안은 저소득 범무보호복지 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저소득 범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. 끝.